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행정환경변화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□ 위임사무 신설 : 13건

-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에 대한 사무 (8건) : 축산과
-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 (2건) : 환경정책과
- 수처리제 제조업 위반사실 등의 공표 (1건) : 수질관리과
- 화물자동차에 관한 권한 (2건) : 교통물류과

□ 위임범위 조정 : 1건

-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(단서 삭제) : 기업유치지원과

※단서 : 다만,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.

□ 관계법령 정비 등 : 9건

- 관계법령 정비 : 3건

-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권한(2건) : 수질관리과
- 화물자동차에 관한 권한(1건) : 교통물류과

- 기타 일련번호 정비 : 6건 (환경정책과)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변화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
주요 내용은

첫째,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로,

- 축산과 소관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에 대한 사무 등 8건,
- 환경정책과 소관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 등 2건,
- 수질관리과 소관 수처리제 제조업 위반사실 등의 공표 1건,

- 교통물류과 소관 화물자동차에 관한 권한 등 2건
등 총 13건의 위임사무가 신설되었으며,

둘째, 관계법령의 정비 등으로 : 9건

- 수질관리과 소관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권한 등 2건
- 교통물류과 소관 화물자동차에 관한 권한 1건,
- 환경정책과 소관 일련번호 정비 6건 등

9건의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다만, 위임범위의 조정 중

-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중 단서조항인 “다만,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」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.”를 삭제하는 경우는,
 -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별표 민간위탁사무의 유치지원과 소관 중 8호 “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”와 중복됨.
 -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붙임 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